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29. 백승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7.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록 하려는 것이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제10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은 학교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교원등의 교육활동 특히 현장체험학습 등에서의 위험부담을 제한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교육활동 중 교원이 법령등에 따라 충분한 지도와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도 민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¹⁾,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법체계²⁾ 및 형사법체계³⁾와 다른 예외를 학교장 및 교원을 주체로

1)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상으로도 고의(과실범의 경우 과실)가 없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정당행위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학교안전사고에만 두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일정한 업무수행시 면책을 규정한 입법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범죄위험이 명백긴급한 상황에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는 별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2023년 개정되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당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은 법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음⁴⁾⁵⁾.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적용 요건이 매우 제한적(적용범죄 제한, 명백긴급성, 불가피성, 최소침해성, 고의·중과실 제외)이면서, 필요적 면책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무부는 개정안이 사실상 「형법」 제20조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학교폭력 처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의 장과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하는 실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였음.

민·형사상 정당행위 심사는 위법성 심사로서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개정안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체계를 취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을 별도의 면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경과실로 인한 행위만 정당행위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기존 정당행위의 위법성 심사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보다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법체계적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상임위 의결안(대안)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안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① ~ ② (생략)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일 것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제>

5) 구체적인 예시로는 학생이 급박한 교통사고 위험에 처한 경우, 교사가 학생을 구조하기 위해 고의로 밀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와중에 학생이 넘어져서 다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은 교원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취지와 함께, 학생등 안전사고 피해자의 보호, 다른 직군 및 직무와의 형평성 및 현행 민형사법상 법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할 것임6).

안 제10조의4 신설에 대해서는, 학교밖 교육활동에 있어서 인솔교사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 및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학교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시 사전답사를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교육청)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고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법체계상 안전요원을 별도로 신설시 현행법상 교육활동참여자⁷⁾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생의 등·하교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교육활동참여자로서 임의적 예산지원⁸⁾)

6) 현행법 체계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2024년 7월 22일 현재 의견조화중)

7) 제2조(정의)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과도 비교가 필요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정성국 의원과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

8) 이른바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현행법 제 2조제5호나목에서 교육활동참여자로 규정하고 제10조의2에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임의적 지원)고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